

# 의 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7. 4. 광영교 의원 외 5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 · 답변할 수 있는 관계  
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붙임참조
4. 검토의견 : 붙임참조

위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20일

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 
전문위원 권 태 환

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. 7. 4 광명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 
2007. 7. 5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전부개정 공포(2007. 5. 11)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개정된 법률과 관련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## 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내용중 개정된 법률과 관련 있는 조항의 법조항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